

			퇴	직	공	직	자	를		위	한		
	취	업	·	행	위	제	한	제	도		안	내	문



인 사 혁 신 처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은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ntents

-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2**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 3** 업무내역서 제출
- 4** 취업사실신고 및 취업이력공시
- 5** 청탁 및 알선 금지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 ① 밀접한 관련성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②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대 상) 취업심사대상자
- (내 용)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가능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소속기관

※ 취업의 범위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

◆ 밀접한 업무관련성 범위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위반시 제재



◆ 취업심사(①취업제한여부 확인, ②취업승인)

절 차 | ①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②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취업승인” 신청 가능

심사결과 |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거나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취업승인 받은 경우 취업 가능

Q

취업심사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 지자체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감사·경찰 등 특정분야*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국방계약 등 특정분야** 5급 공무원
 - * 감사·경찰·소방·조세·검찰·회계·건축·식품위생 등
공정위 소속 공무원
 - ** 군사시설, 국방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등
- 4급 상당 이상 연구·지도관,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등
-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4급 이상 국정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상당 이상 일반군무원
-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학장 포함), 전문대학장,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장·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
 - * 금감원(4급이상), 한국은행(2급이상), 예금보험공사(2급이상), 무역보험공사(2급이상), 철도시설공단(2급이상), 산업부 지정 원자력발전 유관단체(2급이상), 국방부 또는 방사청 감독받는 유관단체(국방부 장관 임명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 품질원은 수석급 이상)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

1.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2. 고위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 1급(상당) 이상 직원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5.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Q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1. 국가안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자체 출자(재출자)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 등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했던 분야로 재취업하는 경우
※ 단,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채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
7. 본인 처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8. 퇴직 전 처리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9.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 단,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

Q

취업심사대상기관이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3조)

구 분	기 준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협회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법인·단체
법무·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사립대학, 초·중등 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외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외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특정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최근 3년 이내 중개수수료 신고한 업체),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 여부 확인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취업제한행위
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 검색란에 “기업명”으로 조회

※ 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 및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특정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는 20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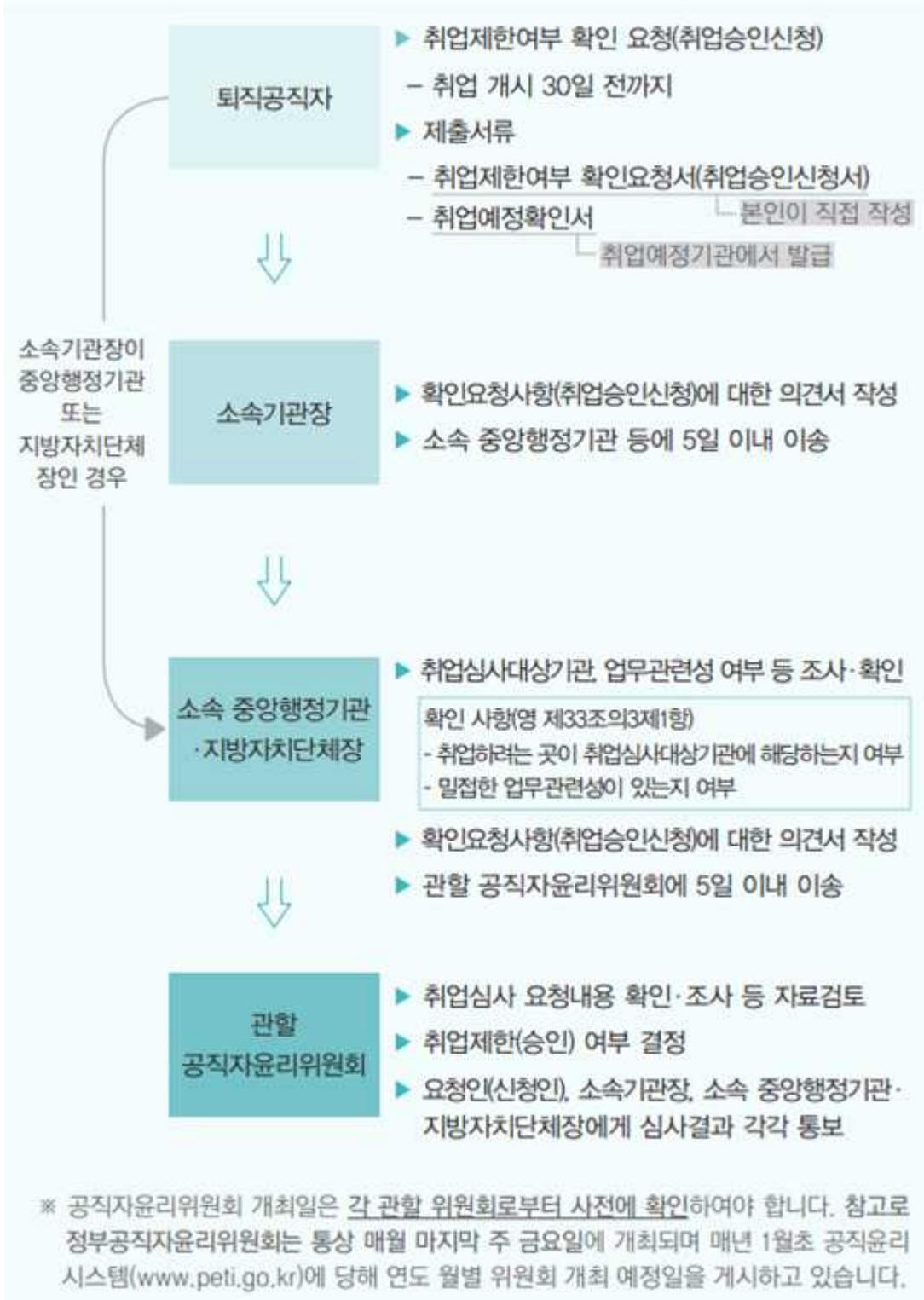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 및 단체는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해당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사명을 변경하였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Q

취업심사 절차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34조)



2.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는 퇴직한 후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대 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 용)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의 퇴직 후 취급 제한

*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32조

※ 처리란 ?

직제·정관·규정에 따라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공문서에 결재를 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명 등을 한 경우 등을 의미

※ 취급이란?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예 외) 국가안보·공익 목적 등 해당 업무취급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 (위반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제2호)

◆ **특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일정한 업무에 대해 퇴직한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대 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내 용)**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에서 취업한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 제한**
- **(예 외)** 국가안보 및 공익 목적 등 해당 업무취급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 **(위반시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1항제2호)

3. 업무내역서 제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3)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시기) 퇴직일부터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2회 제출)
- (제출내용)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비공개

- (절 차)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9호)

4. 취업사실 신고 및 취업이력 공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 취업사실 신고

- (대 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내 용)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장에게 취업사실 신고서 제출
- (위반시 제재) 취업사실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11호)

◆ 취업이력 공시

- (대 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내 용)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취업 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직급)
- (절 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취업이력을 조사(12월 31일 기준) 하여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5. 청탁 및 알선 금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 ◆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재산상·비재산상 이익)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대 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내 용)**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제3호)

<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4)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4.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5.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6. 위의 1~5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